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저자 (Authors)	심종석 Chong-Seok, Shim
출처 (Source)	통상정보연구 14(3) , 2012.9, 231-251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통상정보학회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376963
APA Style	심종석 (2012).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14(3), 231-251.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심종석(Chong-Seok, Shim)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 II. 매도인 구제수단의 일반 | VI. 요약 및 결론 |
| III.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 참고문헌 |
| IV.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 Abstract |

국문초록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제어 : 구제수단, 계약위반, 의무이행, 손해, 피해당사자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국제상거래에서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현재까지, CISG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계약국은 총 7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UN에 CISG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2005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우리 민·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종래, 국제상사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상거래에 참여한 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상거래에서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된 관습 및 관행이 존중되어 왔던 까닭에, 이들 내용이 계약의 교섭·체결·이행·종료의 각 단계별로 적용 또는 수용되어, 당사자들의 지지에 기반을 둔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상사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처리과정은 복잡다단하게 전개됨이 일반적이다. 곧, 계약당사자의 이해(利害)를 온전히 담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테면, 준거법 선정 및 적용의 곤란,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기준의 불안정,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법리적 해석의 상이, 각국 또는 법계 간 법인식의 대립에 의한 예견가능성의 부재, 각국 법원 및 중재기관의 판결·판정의 상대적 불공평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국제상거래의 법적 측면에서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의 장애요인에 기하여, CISG는 당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대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속·민활한 상거래를 통하여 계약당사자 저마다의 이해를 보편적·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방편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제상사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체법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물품매매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대표적·선도적 입법례로 취급되고 있음은 이 때문이다.

위 사실에 비추어, 결국 CISG에 대한 기본적인고도 올바른 이해(理解)는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에게는 각양의 이해(利害)를 담보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임과, CISG에 대한 부지의 결과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과정에서 예

상치 못한 뜻밖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환언하면, CISG에 대한 법리 내지 제반 규정의 이해는 국제무역에 임한 당사자에게는 필수 불가결하고도 긴요한 선결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CISG를 수용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규정으로서, 물품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규정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실무계를 향하여 당해 추론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법리적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 연구결과로서, 이해일(2005)은 매수인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병합하여 당해 CISG 규정에 관한 학리해석을 비교·검토하고, 이에 본 규정 적용상의 유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정일(1995)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CISG, 영국 물품 매매법(SGA), 미국 통일상법전(UCC) 등과의 비교를 통해 CISG 법리상의 실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허해관(2009)은 채무자의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장래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채권자의 대응수단으로서 어떠한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 그러한 각각의 구제수단의 발생요건은 무엇인지 나아가 그 행사에 따른 제한을 고찰하고, 이에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천수 외(2003)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 피해당사자들이 CISG하에서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구제수단의 행사에 관하여 유리하고도 접근 가능한 구제수단을 도출하고 있다. 심종석(2008)은 계약불이행의 요건에 관하여 CISG와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 및 ‘유럽계약법원칙’(PECL)을 비교법적 분석도구로 그 차이점과 유사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국외 연구결과로는, Piliounis(1999)는 특정이행에 관한 구제수단과 대금감액 및 통지에 의한 추가기간의 지정에 관하여 CISG의 연관규정을 중심으로 그 법리적 해석을 통해 영국매매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Garro(1999)는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CISG 적용상의 한계를 영미법과 대륙법계의 처지를 연계하여 이에 상당한 법적용상의 제한과 유의점 등을 도출하고 있다. 그 밖에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법리를 상술하고 있

는 연구는 Flechtner · *et al*(2008), Huber(2007), Schwenzer(2005, 2007), Schlechtriem(199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면, 대체로 그 내용은 CISG의 조문내용을 일괄하여 그 해석과 비교법적 또는 주요 쟁점별 유의점 내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실체적으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제반 규정의 실제적 적용과, 이에 따른 평가를 통한 실무적용상의 시사점 제시에는, 논점 또는 연구목적의 시각차에 기인하여 이를 명확히 확립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이 같은 시각을 배경으로, 무엇보다도 연구범위에 기한 CISG상의 규정내용의 해석을 일반론으로 하여, 당해 규정이 적용된 일련의 판결 또는 판정례를 통한 평가를 이에 결부, CISG상 당해 규정내용의 실제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¹⁾

II. 매도인 구제수단의 일반

1. 매도인 구제수단의 구성체계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CISG 제3편(물품의 매매) 제3장(매수인의 의무) 제3절(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다. 본절 제61조는 피해를 입은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밖의 조항은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제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곧 매도인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제62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위해 추가 이행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에 관한 제63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제64조,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물품의 사양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그 사양을 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65조 등으로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는, 제3편 제2장(매도인의 의무) 제3절(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과 대칭적 편제를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제45조 내지 제52조). 그러므로, 매도인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61조는 매수인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본절 중에서 매수인의 구제와 대칭적 편제를 이루고 있는 조항은, 제62조와 제46조(매수인의 이행청구권), 제63조와 제47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1) 본고에서는 기술 편의상 법원의 ‘판결례’와 중재판정부의 ‘판정례’를 합체하여, 이하 ‘판결례’로 통일하고자 한다.

의 지정), 제63조와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등이다.

매수인의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각 조항은, 본질 이외의 개별 조항들과 상호 대칭적으로 결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는 이행청구와 국내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제28조와 병합하여 다루어야 한다.

한편,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61조 (1), (b)는 손해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74조 내지 제76조에 연관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49조는 계약해제와 관련한 규정 중에 하나로서, 여기에 속하는 규정은 제25조(중대한 계약위반의 정의), 제26조(계약해제를 선언함에 대한 통지), 제72조 내지 제73조(특별한 경우 계약해제의 선언함), 제75조 내지 제76조(계약해제 시 손해산정방법) 그리고 제3편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제5장(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제5절(해제의 효과) 등이 있다.

2. 매도인 구제수단의 내용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²⁾ 본조 (1), (a)에서 매도인은 이하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곧, 당해 조항들은 피해를 입은 매도인에게 본 규정에 의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본조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 (1), (b)에 비추어, 매도인이 제74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내용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곧, 제74조 내지 제77조는 손해의 산정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당해 조항을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적용규정으로서 원용하기 위해서는 제74조가 아닌 본조 (1), (b)를 원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 된다(Schlechtriem, 1998).

매수인이 계약 또는 CISG에 따른 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본조 (1)에 비추어 매도인이 당해 구제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구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증명하는 요구를 그 조건으로

2) CISG, Art. 61 : “(1) If the buy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he seller may: (a)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in Arts 62 to 65; (b)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Arts. 74 to 77. (2) The sell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3) No period of grace may be granted to the buyer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when the seller resorts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하지 아니한다.

본조 (1)은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만을 다루고 있음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본조에 언급된 구제 이외에 그 밖의 구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의 실질적인 내용은, 제71조(이행정지), 제72조(이행기전의 계약해제), 제73조(분할이행계약의 해제), 제78조(연체된 금액의 이자), 제88조(물품의 매각)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조 (3)에 의하면,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허여할 수 없고, 이 경우 오직 매도인만이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3.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판결례

1) 사실관계와 쟁점

본 판결례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으로써 계약해제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³⁾ 관련규정은 제61조, 제64조 및 연관규정으로서 제74조, 제75조, 제77조 등이다.

1997년 5월 오스트리아 매도인은 중국 매수인과 양모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지급조건은 신용장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매도인은 그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당시까지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곧,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신용장 개설을 수차례 독촉하면서, 그 기일이 지체될 경우 양모가 전매될 수도 있다는 통지를 발송하였지만, 그때까지도 매수인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매도인은 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였고, 이에 매수인을 상대로 당해 전매에 따른 차액 및 그 추가비용의 지급청구를 내용으로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다.

2) 판정요지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는 본건 계약에 적용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오스트리아가 공히 CISG의 계약국이므로 이에 본 사건에는 CISG가 적용됨을 전제하고, 본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매도인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나아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매수인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계약에 의하면, 선적기간이 1997년 6월 이내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매수인은 늦

3) 'Oberster Gerichtshof'(Austria), 7 Ob 301/01t., 2002.01.28.

어도 1997년 5월 31일 전에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당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바, 제64조에 의거, 매수인은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제 61조 및 75조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매도인의 전매로 인한 차액의 손실, 이자손실, 추가비용, 창고보관비용 및 그 밖에 일일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당해 차액손실은 계약금액과 물품이 실질적으로 전매된 가격과의 차액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본건 목적물을 전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64조에 의거, 이를 매도인의 계약해제로 취급하였다. 나아가, 제77조에 따라, 매도인은 당해 물품의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 중의 일부분이 매도인이 물품보관의무에 따른 손실을 경감시키지 않아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본건 클레임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추보하였다. 나아가, 이자손실 및 추가비용, 창고비용에 관한 클레임은 계약이 해제되어 물품이 전매된 날짜까지 계산되어야 하고, 또한 기한부 외국환 거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클레임은 본건 매매계약의 기대이익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계약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손실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이 예견할 수 있는 또는 예견했어야 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제74조에 의거, 매도인은 이 손실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3) 평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매도인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매수인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정한 사실은, 법적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상거래계의 관행과 관습을 고려할 경우에도 마땅한 판정주문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선적기간 이전에 당해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는 것도 마땅한 판정주문이라고 생각된다.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하기에 마땅하나, 매도인의 전매로 인한 차액의 손실, 이자손실, 추가비용, 창고보관비용 및 그 자신의 일일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제반 비용의 계산은 계약이 해제되어 물품이 전매된 날짜까지로 한정하여야 하고, 또한 대체거래로 야기된 새로운 계약에서 비롯된 기대이익은 본건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이 예견할 수 있는 또는 예견했어야

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 사건의 적용규정(제61조, 제64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III.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1. 매도인 이행청구권 행사의 법적 기준

제62조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⁴⁾ 이는 대륙법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구제수단이다. 그러나, 보통법상 한정된 상황에서만 당해 구제수단, 곧 통상적으로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본조는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 특히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특별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다(Schwenzer, 2005).

본조에서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만약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에 예컨대, 이하 제64조에 기하여 계약해제를 선언하거나, 제63조에 의거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추가기간이 주어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제28조와 연관된 사항으로써, 곧 본조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CISG가 규율하고 있지 않는 유사한 계약에 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한, 법원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 매도인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판례

1) 사실관계와 쟁점

이탈리아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과 독일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물을 신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⁵⁾ 계약내용에는 ‘확정이 아닌 개략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그 내

4) CISG, Art. 62 : “The seller may require the buyer to pay the price, take delivery or perform his other obligations, unless the sell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용에 있어 ‘휴가철 전, 늦지 않게’라고 수기로 된 문언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휴가철 전이라고 함은 통상 8월 전을 의미한다.

첫 번째 인도분 물품이 1993년 8월 5일에 매수인에게 송부되었다. 매수인은 1993년 11월 30일에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인도분 물품이 1993년 9월 24일에 송부되었을 때, 매수인은 1993년 9월 28일 전언으로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 전액과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매도인은 기존의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난 해에 3번에 걸쳐 물품의 일부 계약부적합을 통지한 후 유보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물품인도를 위한 확정기일이 정해져 있고, 매도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건 계약해제의 선언은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지난해의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인도시기에 늦은 계약부적합의 통지를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부적합한 물품의 반환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건 매도인이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매도인은 제62조에 따라, 물품대금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두 번의 물품인도분은 실제로 합의된 기일이 지난 후 인도되었으나,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만 물품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의 선언은 계약서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매도인 표준약관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행사된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최고한 후에, 그리고 매도인이 그러한 최고를 받고 계약을 이행함이 없이 15일의 영업일이 도과된 후에만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계약서 이면에 인쇄되어 있는 매도인의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은 본 협약의 적용대상인 아니고, 독일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인 이탈리아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탈리아법에 의하면, 위 조항은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해제를 선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인의 해제선언은 효력이 없다.

한편, ‘휴가철 전, 늦지 않게’라고 한 것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인도기일

5) ‘Amtsgericht Nordhorn’(Germany), ‘3 C 75/94’, 1994.06.14. 본건과 유사한 사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ourt of Arbitration’, ‘Vb/97142’, 1999.05.25; ‘Hof van Beroep, Gent’(Belgium), ‘1997/AR/384’, 2009.03.19; ‘Shanghai First Intermediate Court’(China), ‘Unkown’, 2006.04.03; ‘Oberlandesgericht Köln’(Germany), ‘16 U 17/05’, 2009.03.12; ‘District Court Komarno’(Slovakia), ‘5 Cb/254/2008’, 2009.01.28; ‘Foreign Trade Court of Arbitration of the Serbian Chamber of Commerce’(Serbia), ‘T-8/08’, 2009.01.28.

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이에 당사자는 확정인도기일을 합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조항은 그러한 의미에서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아도 인도기일이 확정기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수인은 1993년 8월 5일 첫 번째 인도분을 인수하였고, 매도인이 통지한 두 번째 인도분의 인도일자인 1993년 9월 10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도인의 표준약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매도인에게 15일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은 1993년 9월 10일까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1993년 9월 10일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없다. 또한,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인도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CISG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3번의 부적합 통지 중 하나만이 유효하다. 이 사건에 있어 매도인은 통지가 인도로부터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실제로, 매수인은 하자있는 물품을 매도인에게 반송하였고, 이는 유효한 부적합 선언에 해당한다. 유효한 부적합 통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대금감액으로서 하자있는 물품의 대금전부를 유보할 수 있다.

한편, 매도인이 표준약관에 규정된 6개월의 제척기간 만료 주장과 관련하여,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두 부적합에 관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지난 해 매매에 관해 매도인은 유효하게 통지된 부적합 청구 이외에 매수인이 유보한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평가

본 사건에 있어서 유의할 수 있는 논점은, 신의칙과 계약해제의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그 밖에 그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이러한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제62조의 해석과 적용에 있다.

본건에 기하여, 두 번의 물품인도분은 실제로 합의된 기일이 지난 후 인도되었으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매도인은 본조에 따라 그 대금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시는 본조의 해석에 기하여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 사건에서 법원의 판시사항으로서 계약서의 이면에 기재된

매수인의 계약해제선언의 편입과 매도인의 표준약관에 포함된 조항은 당해 판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점, 그렇지만, 당해 사안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최고(催告), 곧 통지한 이후에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1. 추가기간 지정의 법적 기준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⁶⁾ 이 경우 본조는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제47조와 함께 매수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매도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그 형식·표현 또는 내용이 유사하다. 곧, 제47조와 마찬가지로 본조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매수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자신의 기본적 의무로서 대금지급의무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물품의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제63조에 따라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추가기간을 지정했으나, 당해 추가기간의 완료 시까지 그 결과가 없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 (1), (b)호에 따라 매수인의 의무이행의 지연이 중대한 계약위반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매수인의 의무이행의 지연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본조의 유용성이 부각된다(Huber, 2007).

본조 (1)에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기간은 반드시 상당한(reasonable) 기간이어야 한다. 아울러, (2)에 의하면 매도인은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그 어떠한 구제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매수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본조항의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추가기간에 관한 실례로서, 이를테면 대금지급, 신용장 개설 또는 물품수령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등을 예시할 수 있다.

6) CISG, Art. 63 : “(1) The sell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buyer of his obligations. (2) Unless the sell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buyer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sell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seller is not deprived thereb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2. 추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판결례

1) 사실관계와 쟁점

본 판결례는 매수인이 물품인도에 대한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수일이 경과한 경우에 매도인이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례이다.⁷⁾ 1996년 5월 프랑스 매수인은 스페인 매도인과 주스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860,000리터의 오렌지과즙을 주문했다. 계약상 물품의 인도는 1996년 5월부터 이후 12개월에 걸쳐 분할공급하기로 하였다. 당사자는 이후 물품가격인하의 대가로 당초 9월 상순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9월분 물품을 8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이 8월말까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채, 9월 2일 물품수령을 9월 11일까지 연기하자고 제안하였다.

매도인은 9월 3일과 5일 매수인이 8월말까지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오렌지과즙의 보존을 위하여 이를 농축하였고, 그로 인해 당해 목적물로서 오렌지과즙을 당초 합의한 가격에는 인도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오렌지과즙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에 걸쳐 대체품으로서 오렌지과즙을 당초 계약상 금액보다 높은 가액에 제3자로부터 구입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에 인도받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동 사안은 법원에 회부되었다. 제1심은 매도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본건은 이에 매수인이 항소한 사안이다.

2) 판결요지

항소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8월말 변경계약에 따라 합의된 바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오렌지과즙을 수령하지 않았던 것과, 9월 3일에 매도인이 이미 오렌지과즙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였던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제64조 (1)항 (a)에서는 계약 또는 이 조약에 기초하여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본건에서 물품의 부족, 즉 오렌지과즙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언급한 매도인의 9월 3

7) 'Cour d'Appel de Grenoble, Chambre Commerciale'(France), 'RG 97008146', 1999.02.04. 본건과 유사한 사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Supreme Court of Queensland'(Australia), 'Civil Jurisdiction No. 10680 of 1996', 2000.11.17; 'Hof van Beroep, Antwerpen'(Belgium), '2002/AR/2087', 2006.04.24; 'Corte di Appello di Milano'(Italy), 'Unknown', 1998.12.11; 'Handelsgericht Aargau'(Switzerland), 'OR.960-0013', 1997.09.26.

일자 전언은 8월말에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고 불만을 나타냈던 매도인의 2일 후의 또 다른 메시지와 함께 이를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건 매수인의 행동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25조에서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조에서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불이행되었던 의무가 채권자로서 실질적으로 예견되는 한편, 채무자도 그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

8월말에 인도하는 것을 수령하지 않았던 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합의되었던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당초 계약상 물품수령은 8월말 이후 예정되었던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가격인하의 요구를 받고, 이에 8월말까지 인도하고 수령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법원은 동년 9월 5일 오렌지과즙의 불안정성 및 8월말 이후 농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관하여, 매도인이 언급한 적이 없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매수인에 의한 동년 12월까지의 대체거래는 당해 연도의 오렌지과즙에 관한 것이었다. 8월말까지 물품수령은 매도인에게 가격인하의 교환조건으로서 제안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써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물품인도를 수령하기 위한 추가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3) 평가

제63조의 추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매수인에 의한 추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제47조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이상의 제47조와 제67조의 일반원칙과 조문의 규정내용은 유사하다. 본건 매수인이 계약상 이행기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제63조 (1)항에 따라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항에 따라 추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 당해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 (2)항에 따라, 동 기간 내에는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구제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본조의 취지는 제47조와 같은 경우로서, 매수인이 그 기본적인 의무, 곧 물품대금의 지급 의무와 물품의 인도수령의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를 이행하기에 상당한 정도의 추가기한을 부여하였음에도, 그 추가기간 내에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64조 (1), (b)호에 따라 매수인에 의한 이행지체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곧, 본조항에 따라,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이 정한 추가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의무 혹은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이 그 추가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본조항에서 대금지급의무에는, CISG에 기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계약 또는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물품수령의무는 물품수령뿐만 아니라 매도인에 의해 인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제63조에 의한 추가기간의 지정은 매수인에 의해 이행지체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중요시 된다. 본건에서는 합의한 물품의 수령일까지 인도한 것에 대해 수령하지 않았던 매수인에게 수령일의 수일 후에 매도인이 추가기간의 지정 없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매수인의 의무위반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매도인에 의한 계약해제가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V.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 매도인 계약해제권의 기준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⁸⁾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을 다루고 있는 제49조와 유사하

8) CISG, Art. 64 : “(1)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if the buyer does no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 63, perform his obligation to

다. 곧, 제49조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제81조 내지 제84조는 계약위반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경우에는 공히 매도인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에 관한 통지가 필요하다.

본조 (1)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매수인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한 경우와, 매도인이 제63조에 따라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 또는 물품의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매도인이 본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매수인의 행위가 제25조에 규정된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에 의해 자신의 권리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정도로 피해를 입어야 한다. 실례로,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대금의 미지급, 물품의 수령거절, 계약의무의 불이행 등이다. 다만, 유의할 사항으로 예컨대, 신용장개설 지연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Flechtner, 2008).

매도인이 제63조 (1)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 또는 물품수령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매수인이 그 추가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본조 (1), (b)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제54조에 따라 그러한 목적을 위해 취하여야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매도인이 제63조에 따라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매수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본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본조 (2)에서는 매도인이 반드시 어느 기간 내에 계약해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그 어떠한 시간적 제약이 없다.

그러나, 일단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매도인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했음을 알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본조 (2), (b), (i)에 따라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은 상

pay the price or take delivery of the goods, or if he declares that he will not do so within the period so fixed; (2) However, in cases where the buyer has paid the price, the sell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unless he does so: (a) in respect of late performance by the buyer, before the seller has become aware that performance has been rendered; or (b) in respect of any breach other than late performance by the buyer, within a reasonable time: (i) after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breach; or (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 63, or after the buy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within such an additional period.”

실된다.

그 밖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반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러한 계약의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때부터 상당한 기간 후 또는 제63조 (1)에 따라 지정된 추가기간 완료 후 본조 (2), (b), ii)에 따라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이 상실된다.

2. 물품명세 확정권의 기준

제65조는 계약에서 매수인이 물품의 특징, 예컨대 크기·색상 또는 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본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⁹⁾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물품의 형태·크기 또는 특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본조는 매도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당해 규격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매도인이 당해 규격을 확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의 행위가 계약위반이 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구제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본조 (2)는 매도인이 (1)에 의거하여, 매수인을 대신하여 규격을 확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곧, 매도인이 확정한 규격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이 이와 관련한 규격을 확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여 상이한 규격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매도인이 확정한 규격은 구속력을 가진다.

3.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판결례

1) 사실관계와 쟁점

본 판결례는 제61조, 제63조, 제64조 등이 적용된 사례로서, 당해 조항들에 결부될 수 있는 규정과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¹⁰⁾ 원고인 독일 매도인은 피고인 오스트리아의 매

9) CISG, Art. 65 : "(1) If under the contract the buyer is to specify the form, measurement or other features of the goods and he fails to make such specification either on the date agreed upon o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ceipt of a request from the seller, the seller may,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he may have, make the specification himself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uyer that may be known to him. (2) If the seller makes the specification himself, he must inform the buyer of the details thereof and must fix a reasonable time within which the buyer may make a different specification. If, after receipt of such a communication, the buyer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so fixed, the specification made by the seller is binding."

수인에게 천막을 판매하였다. 양당사자의 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심각한 재정문제 때문에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매수인은 오스트리아 회사법에 따라 파산관리를 당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과 그의 관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에 있는 소유권 유보조항에 의해 자신이 당해 천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인도된 천막을 반송해 줄 것과 그 손실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법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모두 CISG의 체결국이므로 CISG의 적용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계약에 명시된 소유권 유보약관은 당사자의 진술 또는 행위의 해석, 계약의 형식, 청약의 기준, 승낙의 시기 및 방법, 계약의 변경과 서면요건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CISG의 관련 규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법원은 CISG는 재산권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약관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관련된 국내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이에 당해 계약에 유관한 국내법에 따를 경우 동 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본건에 기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지정한 관리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의 해당여부를 정하고 있는 제25조에 비추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제64조 및 매도인 구제권의 총괄규정으로서 제6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시하고, 매수인에 대해 실시된 재산관리가 매도인의 이익을 침해하였고, 또한 계약에 의해 매도인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다. 따라서, 관리자는 그 자체의 지위로서 매수인의 대리인이 된다. 결국, 매도인이 관리자에게 천막의 반송을 요구했으나, 관리자가 이를 거절한 것은 소유권 유보약관에 대한 위반으로서 이 또한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관리자보다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63조에 따른 추가이행기간도 지정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매수인의 행위를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할 수 없는 바, 이에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10) 'Oberlandesgericht Köln'(Germany), 「48 U 244/93」, 2002.02.10.

3) 평가

본 사건에 기하여, 주목할 수 있는 논점은, 계약에 유효한 소유권 유보약관이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물품대금이 완납되기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점, 그렇지만,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에 기하여, 매수인의 관리인이 매수인의 채무를 일괄하여 변제하는 시점 이후에 매도인은 당해 물품을 회수하고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이다. 본 판결은 제61조 및 제64조의 적용 및 그 법적 의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전형적인 판결례로 취급할 수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한, 국제상사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처리과정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국제적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곧, CISG는 국제상사분쟁 또는 계약당사자의 이해를 보편적·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방편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상사계약에서의 실체법적 기반으로서의 가장 성공한 입법례로 취급되고 있다.

본고는 CISG를 수용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규정으로서, 물품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한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제61조 내지 제65조를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그리고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61조는 피해를 입은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매도인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제62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위해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제63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제64조,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물품의 사양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그 사양을 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65조 등이다. 둘째,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은 제3편 제2장 제3절과 대칭적 편제를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는 본조항들은 매수인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과 상호 연동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

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넷째,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다섯째,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본고에서 다룬 판결례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매수인 구제수단의 총괄에 관하여,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할 의무는 매도인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매수인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하기에 마땅하고, 또한 대체거래로 야기된 일실이익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이 예견할 수 있거나, 예견했어야 할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매수인의 이행청구권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이면에 삽입한 매수인의 계약해제선언에 관한 약관과 매도인의 표준약관은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최고, 곧 통지한 이후에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추가기간의 지정과 관련하여, 추가기간의 지정은 매수인에 의해 이행지체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중요시 되는데, 사례에 비추어, 물품을 인도하였음에도 수령을 거절한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추가기간의 지정 없이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면, 매수인의 의무위반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매도인에 의한 계약해제가 계약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매도인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계약내용에서 합의한 소유권 유보약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물품대금이 정히 수령되기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나, 다만 물품대금 지급 이후에 매도인은 당해 물품을 회수하고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참 고 문 헌

- 서정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중재연구, 제5권, 한국중재학회, 1995, pp.365-387.
- 심중석,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요건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8, pp.253-274.
- 이천수 · 이양기, “CISG에서 당사자의 구제권 선택 및 행사상의 제문제”, 산업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3, pp.227-247.
- 이혜일, “국제물품매매법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비교사법,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pp.779-815.
-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예견됨에 따른 대응수단”, 무역학회지, 제34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9, pp.91-115.
- Flechtner H. M.,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 Press, 2008, pp.481-490.
- Huber, P. · Mullis A.,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p.321-338.
- Piliounis, P. A., “The Remedies of Specific Performance, Price Reduction and Additional Time (Nachfrist) under the CISG : Are these worthwhile changes or additions to English Sales Law”, *12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Spring 2000, pp.1-46.
- Schlechtriem, P., *Commentary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 Press, 1998, pp.480-499.
-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 Press, 2005, pp.868-920.
- Schwenzer, I. · Fountoulakis, C., *International Sales Law*, Cavendish Publishing, 2007, pp.447-467.
- ‘Amtsgericht Nordhorn’(Germany), 「3 C 75/94」, 1994.06.14.
- ‘Cour d’Appel de Grenoble, Chambre Commerciale’(France), 「RG 97008146」, 1999.02.04.
- ‘Oberlandesgericht Köln’(Germany), 「48 U 244/93」, 2002.02.10.
- ‘Oberster Gerichtshof’(Austria), 「7 Ob 301/01t」, 2002.01.28.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Chong-Seok, Shim*

The remedies available to a seller that has suffered a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are addressed in Section III of Chapter III of Part III. The first provision in the section, 61, catalogues those remedies and authorizes an aggrieved seller to resort to them.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e section address particular remedies or prerequisites to remedies. The subject matter of the current sectio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obviously parallels that of Section III of Chapter II of Part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Many individual provisions within these sections form matched pairs. Thus 61, which catalogs the seller's remedies, which catalogs the buyer's remedies. Other provisions in the current section that have analogues in the section on buyer's remedies include 62, seller's right to require buyer's performance 63, seller's right to fix an additional period for buyer to perform and 64, seller right to avoid the contract. As was the case with the provisions on buyers' remedies, the articles governing sellers' remedies operate in conjunction with a variety of provisions outside the current section. Thus the seller'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buyer is subject to the rule in 28 relieving a court from the obligation to order specific performance in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not do so under its own law. The authorization in 61 for a seller to claim damages for a buyer's breach operates in connection with 74-76, which specify how damages are to be measured. 49, stating when an aggrieved seller can avoid the contract, is part of a network of provisions that address avoidance, including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the requirement of notice of avoidance, provisions governing avoidance in certain special circumstances, measures of damages available only if the contract has been avoided and the provisions of Section V of Part III, Chapter V on effects of avoidance.

Key Words : Remedies, Breach of Contract, Performance, Claim Damages, Aggrieved Seller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of Foreign Trade, Daegu University.